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7
----------	-----

제출연월일 : 2000. 11.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조항을 간결, 명확하게 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리함(안 제2조제2항).
- 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개정안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조항을 간결·명확하게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리함(안 제4조).
- 라.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추징규정을 보완함(안 제6조).
- 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함(안 제12조).
- 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함(안 제24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지방세법 제7조
- 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지방세법 제270조(국가유공자동에 대한 감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00. 11. 15 ~ 11. 25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허가표준안 --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통보 사항

※ 관련공문 : 경기도 세정 13400-12398(2000. 11. 2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을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을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동조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장의 제목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한다.

제8조의 조명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동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제8조제4호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2세대이상”을 “국내에 2세대이상”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조 제1호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은 제외한다)”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중 “85제곱미터이하”를 “6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14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로 하고, 동조 하단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3조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24조중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를 “의한 전쟁기념사업회”로 하고 “그 고유업무”를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하며, “동 사업회”를 “그 사업회”로 한다.

제24조의2중 “1,000분의 3”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시 세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시세과장 이성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김태호
	담당자 성명·전화	배순철 (행정 219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 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u>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u>(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감면신청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p>	<p>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p> <p>-----</p> <p>-----</p> <p>-----</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u>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u>-----</p> <p>-----</p> <p>-----</p> <p>-----</p> <p>-----</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 (생략)</p>	<p>-----</p> <p>-----</p> <p>-----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 (현행과 같음)</p>
<p><u>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u></p> <p>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의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u>제3조 <삭 제></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u>최초</u>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1. ~ 2.(생략) <u>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u> 4. (생략) ②(생략)</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2세대이상</u>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p>	<p>----- ----- ----- ----- ----- ----- <u>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u> ----- <p>1. ~ 2.(현행과 같음) <u>3.〈삭 제〉</u> 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u>국내에 2세대이상</u> -----</p>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p> <p>-----</p> <p>-----</p> <p>-----</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right;">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p> <p>1. -----</p> <p>-----</p> <p style="text-align: right;">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p> <p>-----</p> <p>-----</p> <p>-----</p> <p>2. ----- 60제곱미터이하-----</p> <p>-----</p> <p>-----</p> <p>-----</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u>최초</u> <u>과세기준일부터</u>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 60제곱미터이하----- ----- ----- ----- -----</p>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 <u>당해</u> <u>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u> ----- ----- ----- ----- ----- ----- -----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u>최초 과세기준일부터</u>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p> <p>-----</p> <p>-----</p> <p>-----</p> <p>-----</p> <p>-----</p> <p>-----</p> <p>--<u>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u>-----</p> <p>-----</p> <p>-----</p> <p>-----</p>
<p>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동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p> <p>-----</p> <p>-----</p> <p>-----</p> <p>-----</p> <p>-----</p> <p>-----</p> <p>--<u>농업소득세</u>-----</p> <p>-----</p> <p>-----</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p> <p><u>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p> <p><u>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p>
<p><신 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u>최초 과세기준일부터</u>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u>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u>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p> <p>-----</p> <p>-----</p> <p>-----</p> <p>1. -----</p> <p>----- <u>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u></p> <p>-----</p> <p>-----</p> <p>2. -----</p> <p>----- <u>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u></p> <p>-----</p>
<p>제20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p>	<p>제20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p> <p>-----</p> <p>-----</p> <p>-----</p> <p>-----</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p> <p>〈신 설〉</p>	<p>-----</p> <p>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p> <p>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의2(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 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자관리 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 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 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p> <p>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p> <p>-----</p> <p>-----</p> <p>-----</p> <p>-----</p> <p>경기 신용보증재단에-----</p> <p>-----</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p> <p>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u>최초</u>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p> <p>----- ----- ----- ----- <u>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u> <u>설립하는 날부터</u>----- -----</p>
<p>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p> <p>전쟁기념사업회법에 <u>의하여</u> 설립된 <u>전쟁기념사업회</u>가 과세기준일 현재 <u>그 고유업무</u>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u>동 사업회</u>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p> <p>----- <u>의한 전쟁기념사업회</u> ----- ----- ----- <u>동법 제5조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u> <u>의한 사업</u>----- ----- ----- ----- <u>그 사업회</u>----- -----</p>
<p>제2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p> <p>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부가가치</p>	<p>제2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p> <p>-----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1,000분의3</u>을 적용 한다.</p>	<p>----- ----- ----- ----- ----- ----- <u>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u> -----</p>
<p><u>〈신 설〉</u></p>	<p><u>제24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p>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27
------------	-----

제안년월일 : 2000. 12. 21.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제외 단서 조문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외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수정함.(안 제2조 제2항 제1호)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외 대상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수정함.(안 제4조 제1항 제1호)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생략)</p> <p>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생략)</p> <p>②(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원안과 같음)</p> <p>②(원안과 같음)</p> <p>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한다)</p> <p>2.~4.(원안과 같음)</p> <p>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원안과 같음)</p> <p>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p> <p>2.~4.(원안과 같음)</p> <p>②(원안과 같음)</p>